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4 | 2025.08.04 (2025.07.21~2025.08.0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고,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상향하며,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경쟁매매 등으로 배우자 등에게株式이 양도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株式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도 일반 라멘구조주택과 같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업화주택 제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株式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의원 등 15인)**」 ,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 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의원 등 13인)**」 ,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기 위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 등 16인)**」 ,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8.4.(월) 14:00 예정되어 있으며, <기재위>, <산자위>, <행안위> 등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국토교통부) 9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고용노동부) 10
- 「주가지각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위원회)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12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4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4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5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8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9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20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2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우주항공청) 2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6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9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9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3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3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3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3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3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3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3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38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의원 등 10인)	3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3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39
•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 등 16인)	39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4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41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41
•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4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42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의원 등 15인) 4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4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 4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4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4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4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4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4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4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의원 등 10인) 4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코인의 유통화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 [금융]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 미 하원 ‘크립토 3법’ 통과
- [지적재산권]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9. - 2025. 7. 22.)
- [ESG] 유럽집행위원회의 획기적 결정: 탄소노미 규제 대폭 완화
- [지적재산권] [2025년 상반기] 상표 및 디자인 분야 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주목할 해외 제도 변화
- [ESG]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그린워싱 방지 위한 투명성 원칙 제시 지속가능성 주장의 명확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제 해설서 발표
- [조세] 미국 GENIUS Act 발효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국제조세 이슈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훈별자유화구역」 지정 - 드론훈별자유화구역 신규 20개 구역 지정 - 규제 완화 및 드론 실증 환경 전면 확대	2025-07-29
-------	---	------------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훈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음.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훈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됨

* (1차, '21년~) 14개 지자체 31개 구역 (2차, '23년~) 9개 지자체 18개 구역 (3차, '25년~) 9개 지자체 18개 구역

드론훈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써,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드론의 시험비행 및 서비스 실증 기간을 약 3~5개월 이상 단축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음.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하여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되었음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훈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두었음.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음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하였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하였음.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음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하여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제3차 드론훈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고 밝힘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국토교통부는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 -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2025-07-31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음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①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p 저조, ②피보험자 수 5% 감소, ③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④사업장 수 5% 감소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 ①재난 :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②주된산업 :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③선도기업 :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됨

고용노동부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불안,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25.7.9)”의 후속조치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2025-07-3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음. 합동대응단은 지난 7.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임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면서,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하며, 주가조작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음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음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을 각오를 갖고,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시행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며,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1 시행
-----------	---	---------------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26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에 관한 정보 및 국민경제·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하고,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의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의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1 시행

정부는 나노패를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산·학·연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나노팹 운영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은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한 장비·시설에 대한 이용 신청·관리 통합서비스,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등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3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의 접수·상담, 피해사실의 조사·확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1 시행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요구 절차와 부담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5-07-22 시행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29 시행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28 시행 예정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73호, 2025.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건설비용 부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 및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6-01-23 시행 예정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1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766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그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노선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7-23 시행 예정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7-23 시행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해 12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신고 대행업자가 수입식품 등의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22 시행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며, 초고금리로 체결한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부업자 등의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의 범위 및 등록요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의 세부 내용 및 대부업자 등의 취소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3. ~2025.08.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25년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15개 특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를 시행한 결과,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각각 연장하고, 특례 활용 실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따른 특례는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28. ~2025.08.27.
-------	-------------------	-----------------------------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2025.08.14.
-------	--------------	-----------------------------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상향하고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2025.08.14.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경쟁매매 등으로 배우자 등에게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하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출연재산을 반복적으로 운용·매각하여 취득하는 재산 일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tel:044-215-4316)

기획재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2025.08.14.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의 위임 또는 요청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와 함께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소액화물의 통관 효율화를 위해 **소액 택배품·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을 이전에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tel:044-215-47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1.
~2025.08.14.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의 장기 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을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며**,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원화자산에 대한 안정적 외국인자금 유치를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 자산투자시 해당 투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조세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조합법인과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세율을 조정하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늘여민, 임업인 조합원과 일정 소득 이하 조합원등에 한정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외에는 2026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하여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분에 대해서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추가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5.07.29.
~2025.09.08.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공청회 진행방법,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 지급의 기준, 정보공개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화: 044-203-3931, 팩스: 044-203-4756\)](tel:044-203-3931)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23.
~2025.09.0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완충저류시설을 명시화하고,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을 용수사용량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적산유량계 부착을 합리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tel:044-201-6998) (전화: 044-201-6998, 팩스: 044-201-7000)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5.07.23.
~2025.09.01.

가.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를 평가·인증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및 관리 절차, 평가기준 등이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 여건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정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주택법」 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을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 의무사용의 예외로 정하는 한편, 다시 공업화주택은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여 라멘구조인 공업화주택에 사전인정바닥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도 일반 라멘구조주택과 같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업화주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난간 국기봉꽃이 설치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을 꽃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상 국기봉꽃이 설치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단서조항의 문구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대별 국기봉꽃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동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국기 게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공용취사장은 입주자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용 식당은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28.
~2025.09.08.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24.
~2025.09.02.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기반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31.
~2025.09.09.

우주기업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문의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전화: 055-856-43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5-07-21 발의

현행법상의 경영권 관련 제도에 따르면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경영권 경쟁수단의 균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어 옴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 받고 있어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고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출과 관련한 3%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개정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등 경영권 관련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것인데, 이에에는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 및 배임죄 적용 대상 증가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은 결국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 317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025-07-22 발의

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안 제341조의4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5-07-22 발의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42조의16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5-07-23 발의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025-07-23 발의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또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하고,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자기주식은 회사가 임의로 의결권 행사나 처분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할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며, 특히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큼

이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하고자 함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법제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안 제343조의2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025-07-24 발의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025-08-01 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소송 비용 부담, 소송 절차의 복잡성, 개별 손해액의 소액성 등의 이유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2025-07-21 발의

중고물품 등을 사고 파는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분쟁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로만 대응할 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며, 온라인 거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인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법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2025-07-23 발의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2025-07-24 발의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249조의8제1항·제2항,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20제1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2025-07-25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제3항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07-28 발의

현행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26조의3 등)

정무위원회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5-07-28 발의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결의원 등 10인)

2025-07-28 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 법)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2025-07-29 발의

최근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인수(Leveraged Buyout, LBO)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인수 채무를 변제하여 자산(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하여 투자대상기업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노동자, 입점상인, 납품중소기업들도 함께 고용위기나 파산위기에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LBO 차입인수” 자체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에 투자대상기업의 자산매각이나 과도한 배당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exit’하는 사모펀드의 “LBO 차입인수”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금융감독이 필요함

기업인수용 사모펀드의 투자자(LP, 사원)는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회사 등 사회적 책임투자(스튜어디십)를 지향하는 기관투자자들로서, MBK와 같은 운용사(LP, 업무집행사원)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는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의해 행위의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음. 실제로, MBK-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하는지 여부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래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업무집행사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LP, 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49조의14제8항)**

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의 중단이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대상기업이 이러한 무리한 LBO 차입거래로 파산 상황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안 제249조의15제11항)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9조의21제1항제7호, 제8호)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5-08-01 발의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3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2025-07-21 발의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91조의25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2025-07-22 발의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직계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개국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평균 최고세율이 약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임

특히 다수의 국가들이 가업승계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음.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경영인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자본 유출과 기업 매각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와 고용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경제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세수 비중 모두 과도한 수준이며, 조세 형평성과 응능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상속세 제도를 유지 중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7-22 발의

인공지능의 추론·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안 제24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2025-07-28 발의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87조의8)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2025-07-28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공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2025-07-28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안 제121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2025-07-29 발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 (안 제55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2025-07-30 발의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 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5-07-30 발의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108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2025-07-31 발의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
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
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안 제121
조의36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5-07-31 발의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
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
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
임 (안 제55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07-21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SK텔레콤의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KT 6.4%, LGU 6.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45조제5항, 제47조의7제2항 및 제47조의8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5-07-28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2025-07-21 발의

현행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안 제28조제3호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2025-07-25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의원 등 10인)

2025-07-29 발의

한국 광고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음.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광고산업분야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서 한국 광고산업의 체질 개선 및 진흥을 위해 광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

현재 광고산업을 재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광고산업분야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2025-07-21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2025-07-23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2025-07-23 발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동안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되어 왔음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2016년 해양플랜트 손실과 수주 절벽에 따른 대형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오랫동안 불황을 경험하며 크게 위축되었고, 2021년 이후 대규모 수주로 조선산업 부활의 기회를 맞았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규모 적자, 2023년 심각한 인력 부족과 일부 중형 조선사의 재무위기 등으로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

더구나, 대규모 투자와 설비 재가동으로 2023년 세계 수주량의 59.3%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에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2025-07-28 발의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 (안 제10조 제8항 및 제24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7-29 발의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2025-07-31 발의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5-07-23 발의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5-07-31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안 제32조제4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2025-07-23 발의

특히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복합 기능을 기반으로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북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하여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2025-07-15 발의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조 및 제45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

2025-07-21 발의

현행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음. 이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만 임금·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3항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지만 위와 같이 급여 등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할 정도로 근로조건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채용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에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 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 등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5-07-22 발의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안 제2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2025-07-23 발의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짜 야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가 37.7%에 달하며, 심지어 2021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63.5%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202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하여 상당수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근로자(57.0%)와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가장 많이 꼽았음

이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07-25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4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025-07-28 발의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2025-07-30 발의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5-07-22 발의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7-23 제출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025-07-25 발의

현재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의무가 부재하여 현황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5-07-3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2제3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8/4(월)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기재위	전체회의	8/6(수) 10:00	- 현안질의(관세협상 관련)
행안위	전체회의	8/5(화) 10:00	- 현안질의(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8/6(수) 10:00	- 현안보고(대미 관세협상 관련)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4(월) 10:00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서명옥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4(월) 14:00	웹3 생태계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4(월) 14:00	박정호 교수와 박수민 국회의원의 토크콘서트 : 인구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박수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8/5(화) 14:00	차세대 해빙연구선 건조사업 및 북극으로 향하는 꿈 : 차세대 해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정일영·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6(수) 14:00	K-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국회의 비전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7(목) 09:30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	이수진·김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8(금) 14:00	건강보험 파헤치기 : CHAPTER1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8/4(월)	「Data+」 제15호(2025-15호) 발간	국회도서관	
	8/6(수)	「World&Law」 2025-8호 발간		
	8/6(수)	「Data&Law」 제33호(2025-8호) 발간		
	8/6(수)	「금주의 서평」 제740호(2025-31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6호(2025-13호) 발간	국회도서관	
	7/16(수)	「Data&Law」 제32호(2025-7호) 발간		
	7/16(수)	「금주의 서평」 제737호(2025-28호) 발간		
	7/15(화)	「NABO Focus」 제118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21(월)	금융	코인의 유통화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7/21(월)	금융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 미 하원 ‘크립토 3법’ 통과
7/22(화)	지적재산권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7/25(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9. - 2025. 7. 22.)
7/28(월)	ESG	유럽집행위원회의 획기적 결정: 탄소노미 규제 대폭 완화
7/28(월)	지적재산권	[2025년 상반기] 상표 및 디자인 분야 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주목할 해외 제도 변화
7/29(화)	ESG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그린워싱 방지 위한 투명성 원칙 제시 지속가능성 주장의 명확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제 해설서 발표
7/31(목)	조세	미국 GENIUS Act 발효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국제조세 이슈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